

이민자와 뉴욕시의 직장 및 가정 내 인권



모든 뉴욕 주민은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임차할 아파트를 찾거나 임차 중일 경우에도 공정한 대우와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. 출신 국적, 이민 신분, 종교적 신념, 억양으로 인해 고용주 또는 임대인에게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**212-416-0197**번으로 전화하십시오.

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.

- 이민 신분을 이유로 낮은 임금 또는 무급으로 직원을 고용하는 행위
- 국적, 종교적 신념 또는 복장, 억양, 이민 신분을 이유로 괴롭히거나 우롱하는 행위
- 자국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처벌하는 행위
- 이민 신분을 이유로 경찰을 부르겠다고 직원을 협박하는 행위
- 국적, 종교적 신념, 복장, 영어발음을 이유로 고용을 거절하는 행위

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.

- 특정인의 이민 신분, 국적,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아파트 임대를 거절하는 행위
- 이민자 또는 특정 국가에서 온 사람과 같은 특정 유형의 세입자는 받지 않는다는 광고문을 게시하는 행위
- 이민 신분, 국적,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합당한 수리를 제공하지 않거나 타세입자에게는 제공하는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

귀하의 권리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**212-416-0197** 번으로 전화하거나 **NYC.gov/HumanRights** 및 **NYC.gov/Immigrant**를 참조하십시오.